

대구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2508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25081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9. 5 선고 2018가합7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곤

변론 종결2020. 11. 26.

판결 선고2021. 1. 14.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9. 5. 선고 2018가합7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0.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7. 4. 4. 접수 제55205호1)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사망하였다" 앞에 "2016. 10. 16."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8행의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원고(또는 D)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추심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채권은 2019. 2. 13.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고 그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또는 D)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나 그 금액, 피고와 C의 관계(부자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피고의 특별수익 관련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1) 망 J은 C의 배우자 O(이하 'O'이라 한다)이 N조합로부터 8,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 상당액을 O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적어도 1,500만 원을 O에게 증여하였다. 그 밖에 망 J이 2014. 5. 2. O의 R조합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도 O에게 증여한 돈이다.
- 2) O은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을 C과 함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망 J의 O에 대한 위 증여는 상속인인 채무자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C은 망 J 사망 당시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을 상속분이 전혀 없게 된다.
- 3) 따라서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그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8,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S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T조합 화정지점과 N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사실관계

(1) 망 J은 2010. 3. 16. N조합로부터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무자 망 J, 근저당권자 N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2) O은 2013. 4. 17. N조합과 사이에 8,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망 J의 위 2010. 3. 16.자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4. 23. 위 2010. 3. 16.자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망 J에서 O으로 변경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새로이 채무자 O, 근저당권자 N조합, 채권최고액 4,5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련 사실관계

(1) 망 J(임대인)은 2010. 10. 26. U(임차인)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U는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2) 망 J(임대인)은 2013. 10. 10. V(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V는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기타 사실관계

(1) O은 2011. 1. 20. 'W'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2) 망 J은 2014. 5. 2. O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망 J이 사망하고 이 사건 분할협약이 이루어진 2016. 10. 16.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32,591,440원이고, 그중 C의 상속 지분(2/11)에 해당하는 금액은 96,834,807원(=532,591,440원 × 2/11, 원 미만 버림)이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 주장과 같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특별수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이 N조합로부터 8,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때 망 J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2010. 3. 16.자 마이너스 대출은 그 채무자가 망 J으로 되어 있고, J이 그 마이너스 대출금을 O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망 J의 대출금 계좌(을 제15호증)에서 O에게 송금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여된 돈인지 차용금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이 위 대출금 계좌로 송금한 돈도 적지 않고 2013. 4.경에는 위 계좌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2013. 4. 17.자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그 채무자가 O이고, 망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O이 망 J의 위 2010. 3. 16.자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담보 제공만으로 그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O이 망 J의 2010. 3. 16.자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책임지고,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수도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그 담보권이 실행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O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O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 부분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피고 2020. 5. 14.자 준비서면)],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차인인 U가 2010. 10. 19.부터 2010. 10. 29.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O의 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O은 그 무렵 망 J의 계좌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J과 O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이 법원의 T조합 화정지점에 대한 2020. 6. 2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위 U가 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또는 위 송금액 사이의 차이를 두고 그 해당 금액만큼 망 J이 O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돈인데 이를 증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다) 망 J이 2014. 5. 2.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의 경우에도 그것이 망 J이 O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당시 망 J과 O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고[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피고 2020. 5. 11.자 준비서면)], 망 J과 O 사이에 위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금융 거래가 있었던 만큼 명목도 분명하지 않은 위 2,000만 원에 대해서만 망 J이 O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라) 피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K, L,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K 등은 피고의 자녀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한편 망 J이 O에게 일부 증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1008조의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를 참작하는 것은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이고, 그 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O은 망 J과 함께 거주하며 망 J의 병시중을 도맡아 하는 등 망 J을 봉양해 왔다는 것인바(피고 2020. 5. 11.자 준비서면), 망 J이 O에게 증여한 것을 C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회

판사박영주

판사공도일

별지

있으나,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로 본다.